

예비심사 안건

의안번호	제 2013- 호
의 결 연월일	2013. 5. . (제 회)

의 결
사 항

「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」
개정(안)에 대한
신설·강화규제 심사안

제 출 자	중소기업청장 한정화
제출연월일	2013. 5. .

목 차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	1
□ 요 약	1
II. 규제심사안	2
1. 연구개발결과의 평가기준, 평가절차	2
2. 정산금·환수금 미납 및 부정 참여한 경우 제한기간·환수범위	7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

□ 요약

규제 사무명	현행 규제내용	변경(또는 신설) 규제내용
<p>1. 연구개발결과의 평가기준, 평가절차</p>	<p>○ <신설></p> <p>법 제31조 제4항</p> <p>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, 평가절차, 같은 항 각 호의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제2항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○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, 평가절차에 <u>'연구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', '목표 달성도, 연구개발 결과 보고서 제출 등 규정 신설</u></p> <p>⇒ (사유)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4항에서 위임한 연구개발결과의 평가기준, 평가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기술개발 참여기업의 법적 근거 확보</p>
<p>2. 정산금·환수금 미납 및 부정 참여한 경우 제한기간·환수 범위</p>	<p>○ <신설></p>	<p>○ <u>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</u></p> <p>○ <u>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</u></p> <p>⇒ (사유) 정산금·환수금 납부기준 등을 현행 고시에서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거짓 등 부정 방법으로 R&D를 참여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로 하여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</p>

II. 규제심사안

1.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, 평가절차

1]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(도입배경)

-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“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”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 확보 필요

(추진방안)

-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, 평가절차 등을 마련

(주요내용)

- ①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으로 “연구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” 과 “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”을 신설
- ②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 종료 2개월전에 제출하게 하고,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결과를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도록 평가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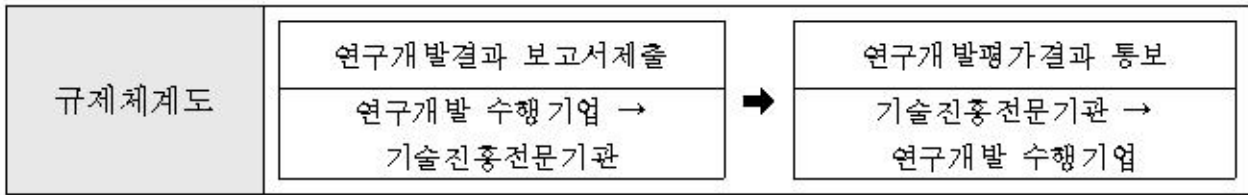
<조문 대비표>

개 정 전	개 정 후
<p><신 설></p>	<p>제20조의2(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) ①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구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2.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3. 그 밖에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<p>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

2] 규제영향분석서

1. 분석대상 규제개요

규제사무명 등	등록번호	미등록		구분								
	등록단위	주규제	부수규제	신설	○	강화		내용 심사		존속 기한 연장		
			○									
	연구개발결과의 평가기준, 평가절차 마련			경제적 규제		사회적 규제		행정적 규제		○		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생산혁신정책과 생산혁신국장 양봉환, 생산혁신정책과장 김일호(042-481-4431) 											
관련규제수 및 근거법령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4항 											
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의견수렴 방식				의견내용					
	피규제자	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		행정예고 (3.24~5.1)				없음				
	이해관계자	중소기업		행정예고 (3.24~5.1)				없음				
	관련 부처	해당없음		해당없음				없음				
규제존속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련 법률인 『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』에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는 유효기간이 없으며, 또한 관련 법률이 한시법이 아니므로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											
현행규제 및 신설(강화) 규제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행 규제 : 없음 강화 규제 내용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에 '연구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', '목표 달성도 등 규정 신설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 종료 2개월 전에 제출하게 하고,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결과를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도록 평가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 											



2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

(1) 규제의 필요성

1-1. 문제 정의

-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4항에서 연구개발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,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
-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소송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제 소지를 사전에 차단

1-2. 규제의 신설·강화 필요성

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『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』 제31조제4항에서 연구개발 평가기준, 평가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또한,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지원사업은 정부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
 - 정부 R&D 투자의 성과제고 및 재정집행의 공정성·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최소 역할임

해외 사례 : 없음

(2)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□ 대안 검토

- 중소기업청 고시인 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”으로 운영되던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규제 대안이 없음

□ 비용·편익 분석

- (비용·편익) 기존 고시로 운영되던 연구개발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·편익이 수반되지 않음

(3) 규제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

3-1 규제의 적정성

- “산업기술혁신촉진법”에서 규정한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수준은 적정

3-2 이해관계자 협의

- 행정예고(3.24~5.1) 결과, 이견이 없음

3-3 규제의 실효성

- “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”를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 확보 및 평가기준·절차를 명확화를 통해 연구개발결과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

2. 정산금·환수금 미납 및 부정 참여한 경우 제한기간·환수범위

Ⅰ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(도입배경)

- 현행 중기청장 고시("12.12.31)로 운영중인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기준 등을 입법례에 같이 시행령에 규정
* (타 부처 입법 例) "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" 등 시행령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참여제한을 부여하여 부정방지

(추진방안)

- 정산금·환수금 납부기준 등을 현행 고시에서 시행령에 직접 규정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를 참여 제한 사유로 추가

(주요내용)

-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신설
 -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(2년이내, 해당금액)
 - 부도·폐업·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(1년이내 및 5년간 추적후 면제)

-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(3년이내, 전액 또는 이내)

<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		개정 후		
[별표 2]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(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)			[별표 2]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(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)		
참여제한 사유	제한 기간	출연금 환수범위	참여제한 사유	제한 기간	출연금 환수범위
<신 설>			8. <u>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</u>	2년 이내	해당 금액
			가. <u>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		
			나. <u>부도·폐업·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	1년	해당 금액 5년간 추원리 후 면제
<신 설>			9. <u>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</u>	3년 이내	전액 이내

2] 규제영향분석서

1. 분석대상 규제개요

규제사무명 등	등록번호	미등록		구분								
	등록단위	주규제	부수규제	신설	○	강화		내용 심사		존속 기한 연장		
			○									
	정산금·환수금 미납 및 부정 참여한 경우 제한 기간·환수범위			경제적 규제		사회적 규제		행정적 규제		○		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청 생산혁신국 생산혁신정책과 생산혁신국장 양봉환, 생산혁신정책과장 김일호(042-481-4431) 											
관련규제수 및 근거법령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1항 											
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의견수렴 방식				의견내용					
	피규제자	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		행정예고 (3.24~5.1)				없음				
	이해관계자	중소기업		행정예고 (3.24~5.1)				없음				
	관련 부처	해당없음		해당없음				없음				
규제존속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련 법률인 『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』에 참여제한은 유효기간이 없으며, 또한 관련 법률이 한시법이 아니므로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											
현행규제 및 신설(강화) 규제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행 규제 : 없음 강화 규제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(2년이내, 해당금액) - 부도·폐업·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(1년이내, 5년간 추적후 면제) 											

	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(3년이내, 전액 또는 이내)	
규제체계도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참여제한 사유발생 연구개발 수행기업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</div> →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 vertical-align: top;">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통보 기술진흥전문기관 →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 수행기업 </div>	

2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

(1) 규제의 필요성

1-1. 문제 정의

-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산금·환수금 미납 및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중소기업에 대해
 - 현행 고시를 근거로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 조치를 하고 있으나,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조치로 법적 근거가 필요

1-2. 규제의 신설·강화 필요성

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“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” 및 “과학기술기본법” 등에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,
- 정산금·환수금 미납 및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는 “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” 및 “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” 등 타 입법사례와 같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

해외 사례 : 없음

(2)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□ 대안 검토

- 중소기업청 고시인 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”으로 운영되던 정산금·환수금 미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규제 대안이 없음

□ 비용·편익 분석

- (비용·편익) 기존 고시로 운영되던 것으로 추가비용·편익이 수반되지 않음

(3) 규제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

3-1 규제의 적정성

- “산업기술혁신촉진법” 및 기존 고시에서 규정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수준은 적정

3-2 이해관계자 협의

- 행정예고(3.24~5.1) 결과, 이견이 없음

3-3 규제의 실효성

- 정산금·환수금 납부기준 등을 현행 고시에서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거짓 등 부정방법으로 R&D를 참여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로 하여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